

쟁력 향상을 위한 세계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FTA에 대비한 지방재정의 대응전략

1) 지방재정조정 분야

생산기반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기준재정수요를 보강하고, FTA에 따른 지방세 개편사항을 기준재정수입 산정시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FTA에 따른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농어업분야 경쟁력 제고 수범사례 등을 발굴·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한·미 FTA가 현재 우리사회에 진전되고 있는 개인간·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본고 제Ⅲ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국가/지방간 복지재정 분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재정관리 분야

앞으로 지방조달은 global standard에 입각해야 하므로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이 일반화되어야 하나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영화 방식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으나 사회공공성의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외국자본은 직접투자(greenfield investment) 외에 간접투자방식으로도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공공성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계약의 철회·취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려 해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는 심사제외대상사업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심의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나, 간접투자형식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외국자본이 공공성에 미칠 영향, 규제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투·융자심사시 경제성 분석 외에 관련분야 국제전문가의 자문이나 심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협력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consulting 및 스폰서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재정기술운영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